

청소년유해매체물 재심의 청구서

※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 30일	
매체물명			
제작자(수입자·유통자)명			
성명		전화	(휴대전화)
		번호	(사무실)
주소			
원심 결정일			
원심 결정 사유			
재심의 청구 사유			
그 밖의 사항			
출석 진술 여부	[] (※ 출석하여 직접 진술을 원하는 경우에만 "√" 표시합니다)		

「청소년 보호법」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재심을 청구합니다.

년 월 일
(서명 또는 인)

청구인

청소년보호위원회 귀하

비고	1. 기재란이 부족하면 별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. 2.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.	수수료 없 음
----	---	---------------

유의사항

- 가. 매체물의 제작자·발행자나 유통행위자는 「청소년 보호법」 제7조에 따른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심의·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심의·결정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소년보호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- 나. 위 재심의 청구는 「청소년 보호법」 제7조에 따른 심의·결정의 효력 및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 고시 절차의 진행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.

처 리 절 차

